

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 ‘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’는 규정에 따라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현행 : 「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
- 개정 : 「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나.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11조)

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다.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조문 정비

- 현행 : 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, 제94조
- 개정 : 「지방회계법」 제39조, 제49조

라.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회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”를 “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”로, “운영”을 “운용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이 회계”를 “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9조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이 회계”를 “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이 회계”를 “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 “(준용규정)”을 “(관리 및 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이”를 “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”로, “것 외에 회계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”을 “것을 제외하고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중전의 「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「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</u> <u>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</u>	<u>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</u> <u>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구미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</u> 를 설치하고 이의 <u>운영</u>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</u> ----- <u>운용</u> ----- ----- --.
제3조(세입 · 세출)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· 보조금 · 분양대금 · 이자 ·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,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조성비, 타회계의 전출금, 기채의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.	제3조(세입 · 세출) <u>특별회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회계간 전용) 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	제4조(회계간 전용) 「 <u>지방회계법</u> 」 제39조-----

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,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.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 지정)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정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, 세외수입 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 출납원, 지출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.
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에 따른다.

제7조(금고의 설치)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를 설치한다.

제10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
--.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 지정) 특별회계-----

-----.
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--
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-----.

제7조(금고의 설치) 특별회계---

-----.

제10조(관리 및 운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--
것을 제외하고는 -----
-----.

제11조(준속기한) 특별회계의 준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-----

에 <u>관하여</u> <u>필요</u> 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	- <u>필요</u> ----- 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「지방회계법」

제39조(세계현금의 전용)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(歲計現金)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(轉用)할 수 있으며,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(辨濟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49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소관 실·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최 동 문
	담 당	정 명 자
	담 당 자	박 영 실 (480-6033)